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제이비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주주와 투자자, 자회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부사장과 전무, 상무, 상무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주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사회 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6. “금융투자업무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 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직원을 말한다.
7. “자회사 등”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 등을 말한다.
8. “사외이사 등”이란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2019. 10. 31. 신설)
9. “회사 등”이란 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을 말한다. (2019. 10. 31. 신설)

제3조 (제정 및 변경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8. 5. 11. 신설)

제4조 (공시)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 구조 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할 경우 즉시(7영업일 이내)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

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③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본 조 제2항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④ 회사는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본 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2018. 5. 11. 신설)

⑤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체 없이(7영업일 이내)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⑥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공시는 회사와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제5조 (법령과의 관계) 이 규범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제6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하로 한다.

②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7조 (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웰위시 후임의장의 임기는 전임 의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⑦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전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8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
2. 이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③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얹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3항 제1호의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인정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⑤ 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3. 29. 개정)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9조 (결의사항 등) ①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018. 5. 11. 개정)

1. 경영목표 및 평가 등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단,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
 6.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신주 및 사채에 관한 사항
 9. 경영 관련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다만 관계 법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10.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차입 등에 관한 사항
 12. 금융사고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2019. 10. 31. 신설)
 13.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2. 집행위원회 결의사항
3.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사무국장의 선임 및 해임
5. 분기별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7.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8. 기타 관계 법규가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하거나 기타 회사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이사의 권리)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대·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회장으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의 권리) ① 이사회는 외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12조 (이사회 권리위임)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법령 및 정관상 이사회의 고유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집행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결의사항 이외의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의결·집행하도록 하며 집행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는 의무를 진다.
3.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는 경영에 대한 감시책임을 진다.
 2. 이사는 정책의 법적·환경적·윤리적 기준에의 부합여부, 내부통제시스템·자산보호 시스템·공시자료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이행 책임을 진다.
 3. 이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등 및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2019. 10. 31. 개정)
- ④ 사외이사는 제3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 참여 등에 할애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책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해당 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10. 31. 개정)
- ⑥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해당 회사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회사 등,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⑦ 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개신하여 사외이사 재직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4조 (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9. 3. 29. 개정)

1.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19. 3. 29. 신설)
2.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한다. (2019. 3. 29. 신설)
3.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19. 3. 29. 신설)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2019. 3. 29. 개정)

제15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2년 이내로 연임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2019. 3. 29. 개정)

- ② 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 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④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⑤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 미만으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
(2019. 12. 23. 신설)

제16조 (이사의 해임 및 퇴임) ① 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 ② 사외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 ③ 이사는 법령 및 정관의 심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정관 제33조 2항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3. 29. 개정)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정관 제33조 2항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 3. 29.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8조 (이사회의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직이사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절차)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9. 3. 29. 개정)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요건 및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이사회 의결권의 제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 실적(개별 이사평가 포함)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2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회사는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까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 10. 31 개정)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 등의 평가 방법 (2019. 10. 31 개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④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사항 및 직전 결산기 동안 제3항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 등의 평가는 정성적부문으로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역량 및 전문성, 회사 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며, 정량부문으로 이사회·위원회 참석률을 평가하며, 세부항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9. 10. 31 개정)

⑥ 사외이사 등의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등의 연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019. 10. 31 개정)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23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2018. 5. 11 신설)

3. 감사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42조 제4항,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
-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주재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9. 03. 29. 신설)

제24조 (2019. 3. 29. 삭제)

제25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대표이사 회장에 한정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8. 5. 11. 개정)

- ② 위원회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자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사는 제외한다. 단,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018. 2. 28. 개정)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주재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상시적인 임원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3.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4.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의 설정
5. 그 밖에 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 ⑤ 위원회는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이사회사무국에 임원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⑨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후보추천서에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와 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⑩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2018. 5. 11. 개정)

- ⑪ 감사위원 후보는 재직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⑫ 임원후보 추천내역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회사CEO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8. 5. 11. 신설)

-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및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018. 5. 11. 신설) (2019. 3. 29.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 5. 11. 신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8. 5. 11. 신설)

1. 자회사CEO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상시적인 자회사CEO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3. 자회사CEO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4. 자회사CEO 자격요건의 설정
5. 그 밖의 자회사CEO 후보추천 관련 사항

⑤ 위원회는 자회사CEO 후보자를 선정하여 자회사의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2018. 5. 11. 신설)

⑥ 위원회는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⑦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그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 5. 11. 신설)

제27조 (감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018. 5. 11. 신설)
2.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2018. 5. 11. 신설)
4.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5.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2018. 11. 2. 개정)
6. 외부감사인 선정 준수사항 및 후보 평가기준 절차 문서화 (2018. 11. 2. 신설)
7.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8.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9.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10.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11.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정성, 효과성 검토, 평가 및 보고 (2018. 5. 11.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 5. 11. 개정)

④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 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 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⑤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8. 5. 11. 신설)

⑦ 전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8. 5. 11. 신설)

⑧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⑨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 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각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⑫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⑬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⑭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⑮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두며, 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 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위험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도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진다. (2018. 5. 11. 개정)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리스크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위원장의 역할 · 임기 등은 이사회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 5. 11. 개정) (2019. 3. 29. 개정)

④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룹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2. 그룹 전체 및 개별 자회사 등(그룹을 기능별 사업부제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그룹 전체 및 개별 자회사 등의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의 승인
4.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2018. 5. 11.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 5. 11. 개정)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018. 5. 11. 개정)

1. M&A, 신사업진출 및 대규모투자 등 그룹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관한 사전 심의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8. 5. 11. 개정)

⑦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5. 11. 개정)

⑧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

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8. 5. 11. 개정)

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리스크관리부서는 위원회를 지원하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로서 배석하여 회의진행을 지원한다. 리스크관리부서장은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안건, 회의경과 및 결의내용,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018. 5. 11. 개정)

⑪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다. (2018. 5. 11. 개정)

제29조 (보수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사발전을 위한 경영성과의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경영 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및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과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2017. 3. 24. 개정)

③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 위원장의 역할·임기 등은 이사회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본부의 장(준법감시인 포함), 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8. 5. 1. 개정) (2019. 3. 29. 개정)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018. 5. 11. 개정) (2019. 10. 31. 개정)

1.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2018. 12. 28. 개정)
2.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4.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과 「임원보수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단,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보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득해야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 상위 법규 변경에 의한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제외) (2018. 12. 28. 개정)
6.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운영 및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019. 10. 31. 신설)

1. 임원성과평가기준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2. 임원성과연동퇴직금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 특례에 관한 사항

제30조 (집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장, 사내이사, 부사장, 상무 등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임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5. 11. 개정)

② 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나 부재 시에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경영전략본부장,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동일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위원회는 매월 일정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019. 10. 31. 개정)

④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1일전에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선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사회가 위임한 회사경영에 대한 기본방침 및 종합업무계획의 집행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다만 관계 법규의 제, 개정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3.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한 계약과 협약에 관한 사항 (2018. 5. 11. 개정)
 4.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건당 10억원 초과의 중요한 소송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018. 5. 11. 개정) (2019. 10. 31. 개정)
 5. 중요한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처리 대책에 관한 사항 (2019. 10. 31. 신설)
 8. 기타 회장이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위원회는 제⑤항의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본부의 장 또는 관계 직원에게 이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1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회사는 연간 위원회 운영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까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32조 (회장의 자격요건) ①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② 회장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로서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회장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다른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단, 외부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두루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되지 못한다.

제34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동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절 임원의 권한(업무범위)과 책임(배상책임 포함)

제35조 (회장의 권한과 책임) ①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집행한다.

② 회장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지키며 신의에 촉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부사장과 전무, 상무, 상무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업무집행책임자는 업무집행책임자 규정과 회사의 제 명령 및 지시를 준수하고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준법감사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8조 (회장의 선임) ① 회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와 이 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2019. 3. 29. 개정)
 ② 회장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9조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조직운영상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외)는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회장은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시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상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여부를 확인하고 능력에 근거한 선임과 해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 5. 11.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재무관리·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업무집행책임자로 임용된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의 고용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내(초임은 2년)에서 회장이 결정하며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임기에 통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업무집행책임자 임용시까지 그 임기를 1개월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018. 5. 11. 개정)

제4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①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2018. 5. 11. 개정)
 ③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며 재선임 될수 있다. 재선임 되는 경우에도 임기는 2년 이상 3년 이하 범위로 한다. (2018. 5. 11. 개정)
 ④ 위험관리자의 임면, 임기 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제4절 임원의 해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41조 (회장의 해임 및 퇴임) ①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회장은 법령 및 정관의 심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 및 퇴임) ① 업무집행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퇴직처리 한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2. 의원면직 하였을 때
 3. 인사 관계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외)가 기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8. 5. 11. 개정)
 5.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였을 때 (2018. 5. 11. 신설)
 - 가. 금융기관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규정·명령·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
 -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로 하며, 이 때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 5. 11. 신설)

제5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43조 (사외이사 등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신임 사외이사 등에 대하여 그룹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 10. 31 개정)

② 회사는 사외이사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19. 10. 31 개정)

제44조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 그룹의 전략, 금융, 경영·경제 현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 5. 11. 개정)

제45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매년 임원후보자에 대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선정

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연수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46조 (임원에 대한 평가주체)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2018. 5. 11. 개정)

제47조 (임원에 대한 경영목표 및 평가지표) ①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가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2018. 5. 11. 개정) (2019. 3. 29. 개정)

② 회장의 경영목표는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로 구분되고, 정량적 목표는 리스크지표를 포함한 재무성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등으로 구성되며 정성적 목표는 경영전략과제, 직무수행, 개인역량 등으로 구성된다.

③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타 임원의 경영목표는 전항에 준하여 직위와 직책에 맞추어 적의 조정한다.

⑤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8조 (임원에 대한 평가방법 및 활용방안 등) ① 성과평가는 매 회계연도별 경영목표와 실적치 내지는 이행도 등을 비교하여 실시한다.

② 회장은 평가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보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 5. 11. 개정)

③ 보수위원회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향후 해당자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9조 (임원의 보수체계) ① 사내이사(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의 보수는 기본급과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에 의한 성과급, 경영활동수당으로 구분한다. (2018. 5. 11. 개정)

②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활동수당과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2018. 5. 11. 개정)

③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성과급은 성과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 5. 11. 개정)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50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원칙)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 이라 한다.)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한다.
(2018. 11. 30. 개정)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⑤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51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①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고 최고경영자 승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배구조 담당부서로 한다. (2018. 5. 11. 개정)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업무 (2018. 5. 11. 개정)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연 1회 이상 제2항의 각호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8. 5. 11. 개정)

제52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주회사 등의 최고경영자가 되지 못한다.

1.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의 부실화와 관련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③ 기타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2018. 11. 30. 신설)

제53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후보자로 추

천하여야 한다.

-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사외이사,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 기관, 사내 및 사외이사 지원부서 등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018. 5. 11. 개정)
- ④ 기타 세부적인 후보 추천절차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2018. 11. 30. 신설)

제54조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5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회사는 임원의 임기를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부 칙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등
제정	2016. 10. 31.	2016. 10. 31.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부터 제24조(위험관리위원회)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을 선임한다. (업무집행책임자의 고용계약기간에 관한 특례)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이 규범 시행이후 최초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제3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1)	2017. 3. 24.	2017. 3. 24.	
개정(2)	2017. 12. 22.	2017. 12. 22.	
개정(3)	2018. 2. 28.	2017년 사업연도에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등
		대한 주주총회 종결시	
개정(4)	2018. 5. 11.	2018. 5. 11.	[그룹 규정 표준화에 따른 개정]
개정(5)	2018. 11. 2.	2018. 11. 1.	[외감법 개정사항 반영]
개정(6)	2018. 11. 30.	2018. 11. 30.	
개정(7)	2018. 12. 28.	2018. 12. 28.	
개정(8)	2019. 03. 29.	2019. 03. 29.	
개정(9)	2019. 08. 02.	2019. 08. 02.	
개정(10)	2019. 10. 31.	2019. 10. 31.	
개정(11)	2019. 12. 23.	2019. 12. 23.	